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-131호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2월 27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
대상품목 지정내역

구분	산업군	제품군	세분류		세부분류		산업 분류 번호	특이사항	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
		제품명	물품분류 번호	품명	세부분류 번호	세부분류명			
9	전자·정보통신	다중화장치	43221810	광다중화장치	4322181001	광다중화장치	26410		○
			43222695	다중통신장비	4322269501	다중통신장비			○
			43222822	시분할다중화장치	4322282201	시분할다중화장치			○
		데이터포트장치	43222611	네트워크채널또는 데이터서비스유닛	4322261103	데이터포트장치	26410		○
					4322261102	디지털서비스유닛			○
					4322261101	채널서비스유닛			○
		전화교환기 네트워크연결장치	43222696	동보장치	4322269601	동보장치	26410		○
			43221501	자동안내장치	4322150101	자동안내장치			○
			43222818	배선반	4322281801	구내단자함			○
					4322281802	국선단자함			○
					4322281803	본배선반			○
					4322281804	중간배선반			○
					4322281805	통합배선반			○

부 칙

1. 동 지정내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. 종전 중소기업부 공고 제2017-94호(2017.11.3)를 폐지한다.

2.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3. 제품의 분류 및 해석

① 제품의 해석은 물품분류번호,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물품분류번호,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,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.

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”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.

4.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품분류번호(8단위) 및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(조달청 훈령 제1684호)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(10단위)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(www.g2b.go.kr) 내 목록정보시스템에 따른다.

☞ www.g2b.go.kr → 목록정보시스템 → 일반검색 → 품명검색